[정책토론회]

분권과 협치의 시대,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위한 일보전진

2017.8.11.(금) 10:00-12:00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1층 무궁화실

목 차

Ⅰ. 개요

1. 행사소개 및 세부일정 ····· 4

Ⅱ. 발제문

1. 지역분권시대, 지역영화진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전병원) ····· 7

2. 지역영상문화생태계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초점 (강석필) ····· 21

3.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혁신 방안 (허경) ····· 33

- [참고자료] 지역/영상문화 관련 정책논의 등 경과 ····· 46
-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50

행사소개

●● 배경 및 취지

▷ 새 정부의 문화분야 첫 번째 국정과제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역시 국정과제임.

▷ 지난해 '영비법 제38조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등 '지역 영상 문화 진흥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의 시행에 따라 '지역 영상문화 향유'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미 주요한 영화/영상 정책영역으로 포함되었음.

▷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지역 간 격차 없이 영화/영상을 통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영화인들은 제작과 배급을 위한 활동을 자신의 삶/생활의 근거인 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두개의 영역이 서로에게 자원이 되어 긴밀히 연결되어 선순환구조로서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지역영상문화생태계'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과정은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 관련 민간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민간주체들에게 정책적 권한이 이양/부여되는 과정이어야 함. 또한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주체들이 상호소통하며 각 지역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차원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상향식 정책체계 역시 '지역영상문화생태계'에 포함되는 것임.

▷ 이에 지역의 영상문화생태계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할, 창작자, 지자체 산하단체, 지원시설, 영화/영상단체 등과 함께 각자와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함.

●● 개요

▷ **명칭** 분권과 협치의 시대,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위한 일보전진

▷ **일시**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1층 무궁화실

▷ **주최**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가나다 순) 지역영화네트워크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영상위원회

▷ **후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영화진흥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 **주요내용** 지역영화인/영화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영상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혁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 세부프로그램

▷ **인사말** 참석 국회의원, 청풍영상위원회 위원장(제천시장)

▷ **전체사회** 유순희((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좌 장**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 발제

1. **지방분권시대, 지역영화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전병원(전북대학교 인문영상연구소 책임연구원)
2. **지역영상문화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초점**
   -강석필((사)한국영상위원회 사무총장)
3.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혁신 방안**
   -허경((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지정토론

-최용석((사)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김용훈(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장)

[발제1.]

지방분권시대 지역영화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전북대학교 인문영상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병원

●● 지역영화정책의 필요성

[지방분권시대 문화분권 요구의 당위성]

한국은 1995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정체성확립, 지역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분산 및 분권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국가 균형발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즉 기회균등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장치이다.[1]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행정과 재정의 권리를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분권을 요구하는 시대에 지역영화정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하는 것은 한국영화정책의 현주소와 같다.

[문화정책에 대한 대응]

한 나라의 영화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지역문화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점차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지역영화정책 또한 현 한국의 지역문화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한국영화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길이며, 한국문화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림 1〉 문화정책과 영화정책의 상호관련성

[한국영화 한계의 극복]

한국영화산업은 2002년부터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던 CJ, 동양이 배급에 참여, 2~3년간 경쟁체제를 거쳐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상영 및 부가판권

1) 전병원,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3. p 26.

플랫폼, 케이블 채널까지 대기업 수직계열화로 재편되면서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한국영화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2]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극심한 쏠림현상은 자율경쟁 시장구도의 산업적 논리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국영화계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은 한국영화산업구조의 최대 피해자이자 동시에 무풍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한국영화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원동력으로 지역영화정책이 작동되게 할 수 있다. 지역영화는 한국영화생태계에 자생능력을 키우고, 한국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며, 한국영화산업의 입체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은 한국영화산업구조의 최대 피해자이자 동시에 무풍지대이다. 따라서 미래의 지역영화정책은 현 한국영화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영화는 한국영화생태계에 자생능력을 키우고, 한국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며, 한국영화산업의 입체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한국영화가 주춤하고 있다.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한국영화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시장이 2019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사실 부정적이다. 2015년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1인당 영화관람횟수(인구대비 영화관람객수)는 2016년 소폭 하락했다. 즉 현재 산업구조가 이룩할 수 있는 성과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판단된 한국영화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한 단계도 더 나아갈 수 없는 현상유지만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들이다.

그러면 지역영화정책은 현재의 한국영화 현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단언적으로 먼저 말해두자면, 지역영화정책은 현 한국영화산업의 탈출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영화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그렇기에 지역에는 영화산업기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문화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지역영화정책은 현 한국영화산업과 문화환경에 부정적으로 작동될 요소나 가능성이 극히 미비하다. (미래의) 지역영화는 현 한국영화산업에 무조건적 '+α' 요소가 될 수있다. 지역영화의 활성화는 한국영화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동할 수 있다.

2) 김도학, 『영화진흥사업백서 1999-2006』, 영화진흥위원회, 2007, p. 50

●● 한국 지역영화정책의 흐름

한국지역영화진흥정책의 흐름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과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 매년 공개되어온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서'와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등이 있다.
2006년 신설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영화진흥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표면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자료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진흥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한국영화진흥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중심 추진과제의 선정, 세부 진흥계획의 마련 등 일체는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이 초안을 작성한다. 거기에 영화진흥위원 9인 위원회의 의사토론 및 결정을 통해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과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 및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서'와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안에서 한국지역영화관련 정책들의 흔적과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후, 2000년도에 1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0~2004)이 발표되었고, 이는 2003년 2차 참여정부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3~2007)으로 버전업 된다. 2006년 10월 한미 FTA로 인한 스크린 쿼터의 축소 직후, 큰 폭의 조정을 통해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7~2011)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6년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16~2018) 3개년 계획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지역영화정책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3년 발표된 '참여정부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3~2006)'에서이다.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활동 지원'을 목표로 '지역 기반 영상미디어 활동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한국영화의 해결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상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 당시 '퍼블릭액세스',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미디어 개념과 '독립영화'의 개념이 중복, 혼재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한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영화제작지원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을 진행한다. 서울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이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이후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의 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환된다.

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백서 1999~2006』, 2007. p.130.

2006년 발표된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7~2011) 5개년 계획에서는 6대 중점 과제 중 다섯번째로 '지역영상산업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운영지원' 사업과 '영화찍기 좋은 도시 사업'으로 한국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다. '영화찍기 좋은 도시 사업'은 지역영상위원회 주관 촬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로케이션 공동 DB구축과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지역영화정책이기보다는 한국영화제작 지원사업이라 판단된다.

2012년~2017년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서'와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영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역의 작은영화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또는 '영화산업 유통지원' 사업을 통한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 정도가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국내영화제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화단체지원 사업'이 있기도 했다. 실제 영화단체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지역 단체들이 주로 각 지역의 '독립영화제'이다보니 현실을 반영한 수정방향이라 판단된다.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보고한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16~2018) 3개년 계획에 따르면, 한국영화시장의 과제로 '영화문화측면에서 깊이와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예술영화 등 실험적이고 다양한 영화들은 관객선호도가 낮고, 상영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창작과 상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문화기본법>(2014.03.31.) <지역문화진흥법>(2014.03.3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11.19)의 취지를 반영하여, 창작자 중심의 기존 문화정책(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으로 확대'하고 '지역, 계층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영화를 누리는 문화와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4] 또한 10대 추진과제에 '창의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영화를 창작·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영화 창의력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화 향유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계층에 영화관람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영화진흥정책은 미디어센터 설립(전주), 한국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예술영화관과 작은영화관 지원, 지역독립영화제 지원으로 파악된다.

4)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2016~2018」, 2016. p.13

참고 자료 / 연도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서/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003-2007	- 영상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 문화다양성과 **공공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영상진흥 · 지역 영상위원회 지원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 ·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활성화 지원(독립영화, 퍼블릭액서스 등 비주류 창작활동 지원) · 미디어센터 운영전문가 교육
2007-2011	- 지역영상산업 균형 발전 - 지역영상산업 육성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 영상위원회협의회 '영화찍기 좋은 도시'사업 · 문화산업클러스트 (대구, 춘천, 전주) · 지역국제영화제 지원 강화
2012-2015	- 국제영화제육성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영화단체지원사업 -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2016-2018	-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환경 · 지역 계층을 넘어 영화를 누리는 문화와 산업환경 조성 · 창의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 전국광역자치단체 작은영화관-공공다양성상영관-찾아가는영화관-영상문화 나눔버스 운영 네트워크 구축 · 지역영상위원회, 지자체, 영진위 협력지원
2017	- 국제영화제육성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영화단체지원사업 -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2018	- 국제영화제육성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영화단체지원사업 -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 작은영상미디어센터 조성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 지역영화산업생태계조성

〈표 1〉 지역영화진흥정책의 흐름

●● 방향성과 목표

[방향성]

●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

지역영화정책은 현 한국영화구조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보안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즉, 대기업수직계열화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서울·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 영화문화의 획일성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작용되어야 한다.

영진위 진단대로 한국영화는 안정지향적 영화제작과 극심한 저예산영화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영화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이 부족한 획일성이 증대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작은영화관' 사업이 지역의 주민에게 영화향유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영화산업의 최대 난제인 스크린독과점과 소수 대기업으로 수익의 쏠림현상을 가중화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영화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 지역영화정책 추진주체에 대한 고민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영화진흥정책에 있어 단 한 번도 정책주체인 적이 없다. 그동안 지역영화정책과 사업들은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제, 시네마테크, 극장 등 다양한 단체와 그 소속 지역 영화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 왔다.

지역문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지역문화주체와 중앙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와 대안들은 많은 연구가 되어있다. 지역 영화진흥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정책은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는 추진체계가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영화관련 기관으로 지역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단체나 기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영화진흥정책을 실행할 추진 주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영화영상관련 단체들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은 지역영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전국적 조직을 지닌 한 단체의 협의체가 아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나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지역의 영화영상관련단체 협의체 중심의 지역영화진흥정책의 추진체계 구성방안은

5)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백서 1999~2006』, 2007. p.130.

총괄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화진흥위원회는 '미디어센터'중심의 획일적인 지역영화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3년 이후, 지역 관련 영화정책의 중심에 언제나 '미디어센터'가 있다. '지역영화사업=미디어센터'라는 일편적이며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미디어센터는 설립주체가 다양하다.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지자체,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주체이다. 전국 미디어센터의 각기 다른 설립주체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비전과 목표로 지역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미디어센터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영화진흥정책을 실행하는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영화영상단체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방향 2004		새로운 정책방향 2004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2018 영화발전기금 운용 계획
중앙·관 주도의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	지방·민간 주도의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집행	⇔	지방·민간 주도의 지역영화정책 수립 및 집행
				영화진흥위원회 주도
생활권 단위의 문화 기반시설 부족 및 공급자 중심 문화공간 운영	→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및 수요자 중심 문화공간 운영	⇔	수요자 중심 영화문화공간 운영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
지역문화프로그램의 획일성 및 수도권 집중화	→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문화프로그램 균형발전	⇔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영화문화프로그램 균형발전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역문화 혁신역량 미흡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혁신역량 강화	⇔	지역 영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영화 혁신역량 강화
				미디어센터 운영인력 재교육지원
지역문화발전 소요재원 부족 및 재원 분배의 왜곡	→	지역문화발전 소요재원 확충 및 형평·합리원칙에 입각한 배분	⇔	지역영화발전 소요재원 확충 및 형평·합리원칙에 입각한 배분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기획개발 제작지원

〈그림 2〉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추진방향 전망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 방향 비교

● **확고한 지역영화정책의 비전과 목표 확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영화정책의 역사 속에서 지역영화정책이 제대로 계획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 한국지역문화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영화정책은 휴업상태였기에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영화정책 사이에는 이미 메울 수 없는 시차가 존재한다. 현재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그간의 간극을 복구할 수 있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용이 아닌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2년 추진사업이 늦어진다고 한국영화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좀 더 깊이 숙고하여 튼튼한 정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은 이미 인프라구축 단계를 지나 프로그램 구축 단계, 창작자 지원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에서 창작자 지원정책을 실행해 본 적도 없다. 창작자라는 인적 인프라도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향유권'이 중심이 된 수요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이 진행되면 지역은 창작의 주체가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역을 객체화된 대상으로 보면서 문화복지, 문화시혜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중앙의 태도와 결부되어 지역의 잠재적인 주체적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 **영화산업정책과 영화문화정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한국영화정책의 목표는 영화산업진흥에 있었다. 자연스럽게 영화문화관련 정책들은 한정적이었으며,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등 비상업적 영화관련 영화인들은 그동안 영진위 정책들에 많은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최근에는 독립된 '영화문화관련정책기구' 또는 독립된 '독립영화정책기구'를 설립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먼저 한국영화진흥정책의 책임이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각한 반성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통감해야만 한다. 이런 목소리들은 산업과 문화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몰라서 하는 주장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정책과 영화문화정책으로의 이분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영화진흥정책 체계를 수립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영화산업정책과 지역중심의 영화문화정책이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화산업정책과 영화문화정책으로의 구분이 유효한 지점은 한국영화진흥정책의 균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때 뿐이다.

프랑스 CNC의 부국장인 마크 니콜라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프랑스의 영화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프랑스 영화정책의 오랜 원칙은 영화는 하나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상업성이 강한 영화와 문화적인 수용을 고려한 예술영화로 나눠서는 곤란하다. 문제 접근방식부터 그걸 분리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건강한 영화시장이 형성되려면 많은 관객이 필요함과 동시에 다양한 작가군이 존재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의 결과는 균일하지 않은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영원한 흥행감독도, 영원한 작가도 없다. 프랑스의 경우, 감독들은 장기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다. (…) 이들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영화야말로 다양한 관객, 즉 많은 관객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쪽에 치우친다면, 곧바로 영화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소구층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성장의 밑거름이다. (…) 무엇보다 정책의 핵심은 전 국민이 영화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제작중인 영화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극장지원, 해외배급,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작, 학교 교육프로그램 계발 등과 맞닿아 있다. 그래야만 문화적 요소가 싹틀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영화뿐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등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점이다. 새로운 영화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의 자극 없이는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 일단 지금의 수준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영화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지원의 규모 역시 좀 더 커져야 한다. 시나리오 개발이나 멀티플렉스가 아닌 개성적인 극장 운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6]

● 규제와 지원의 조화, 기회균등에서 결과균등으로

한국영화정책들은 대부분 지원정책들이다. 한국영화계는 1990년 초반까지 관 주도의 검열과 통제가 목적인 과거 규제정책들에 대해 매우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는 '스크린쿼터'가 유일한 규제정책이라 볼 수 있다. 지원을 통한 상대적 규제라는 온정적 규제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다. 온정적 규제정책은 그 정책 대상

6) 전병원, 「ADRC(지역영화발전기구)와 프랑스 영화다양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58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6. p. 438. 이영진, 「쿼터가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 『씨네21』, 2001. 7. CNC 부국장 마크 니콜라와 인터뷰 중, http://cafe.daum.net/apecum 재인용

간의 간극이 적을 때는 유효하지만 중앙 중심의 한국영화와 지역영화라는 정책 대상처럼 그 간극이 100:0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그 효력이 미비하다. 따라서 지역영화정책은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이 적절하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이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가 있다. 한국영화산업구조가 90% 이상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정책의 대상 또한 90% 이상 중앙 중심이었다. 영진위 출범 이후, 중앙 중심의 한국영화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이제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영화는 아직 이유식이 필요한 아이이거나 태동도 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정책대상 간의 격차를 무시하는 기회균등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정책과 같다. 아이와 산책을 할 때는 어른이 기다려주거나, 아이에게 자전거를 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는 '결과 균등(역누진률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한국영화가 지역영화정책에 발이 묶여 멈춰서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지역영화에 자전거를 탈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목표**]

●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역균형개발과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영화 환경 격차를 줄여야 한다.

● 영화산업과 영화문화 활성화

지역영화정책은 지역민의 영화문화 및 영화산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역영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영상산업 및 문화 기반 인프라 구축

지역영화정책은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영화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영화문화 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영화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 지역영화진흥정책 추진주체 육성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지역민 위주의 지역영화진흥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

및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영화영상단체 등이 지역영화의 진흥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영화정책 행정과 재정의 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영화영상정책 관련 단체들에게 문화행정차원에서의 권한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table>
<tr><th></th><th></th><th>정책방향과 목표</th></tr>
<tr><td>비전과 목표</td><td>왜?</td><td>▪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추동력 구축
▪ 한국영화산업 한계 극복
▪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조화
▪ 중앙과 지방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격차 해소</td></tr>
<tr><td>추진주체</td><td>누가?</td><td>▪ 지방·민간주도형 + 중앙·관주도형 융합형
<table><tr><td>주: 지방 · 민간</td><td>콘텐츠</td></tr><tr><td>부: 중앙 · 관</td><td>인프라 구축</td></tr></table></td></tr>
<tr><td>추진과제</td><td>어떻게?</td><td>▪ 지역 특성과 환경 고려
▪ 지역영상단체프로그램 고유성 보장(상향식)
▪ 행정과 재정 분권
▪ 지원정책 + 규제정책 융합형
▪ 기회균등 + 결과균등 융합형</td></tr>
<tr><td>세부사업</td><td>무엇을?</td><td>▪ 지역영화산업기반 구축(중소형영화제작)
▪ 지역영화문화 다양성 확보(공공상영관 등 인프라구축)
▪ 지역영화문화 향유권 확대(상영배급지원시스템구축)</td></tr>
<tr><td>시기</td><td>언제</td><td>▪ 지역영화정책 중장기계획 설립 후
▪ 지역영화추진체계 확립 후</td></tr>
<tr><td>범위</td><td>어디서</td><td>▪ 지역거점 광역단체
▪ 기초지자체</td></tr>
</table>

〈표 2〉 지역영화정책 방향과 목표

●● 문제점과 과제

[지역영화정책 중장기방안 부재]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은 '조사/분석-계획수립-공유 및 의견수렴-실행-평가'의 단계로 진행된다. 정책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의 파악→정책 비전과 목표의 설정→정책대안 분석과 정책수단의 확보→공유 및 의견수렴→정책의 결정→실행→평가의 과정이다.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의 실태와 해결책의 필요성, 가치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정책대안 분석 및 정책수단 확보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론 제시, 선행 혹은 유사 사례 참고, 정치적 입지 검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결과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집행 후의 환류를 위해 필요한 사후 대책이 될 수 있다.[7)]

하지만 현 영화진흥위원회는 아직까지 지역영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영화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사업계획에 이미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책결정의 기초단계는 모두 무시하고 실행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영화산업문화 환경과 괴리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영화인들의 의견 수렴과정 생략, 지역의 요구 실행의지 빈약]

지역영화진흥정책의 추진주체는 지자체, 지역의 영화단체 및 영화인들일 것이다. 정책 실행의 추진 주체의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란 힘들다.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영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영화를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지역영화진흥정책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영화발전기금의 재배치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화발전기금 또한 한시적 분담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정광렬,조현성,김가진), 「지역문화정책의 현재와 전망」,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 분석 제 2011-17호, 2011. 10. 24 p.15

금이어서 한국영화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에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영화 정책 지원을 위한 장·단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안일한 사업결정**]

지역의 실정과 현황, 지역민의 요구에 대한 조사와 의견수렴 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사업 개발은 불가능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03년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지역영화에 대한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 너무나 안일하며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다.

[발제2.]

지역영상문화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초점

(사)한국영상위원회 사무총장,
다큐멘터리 감독
강석필

●● 정책 논의를 위한 인식

[**영상산업의 전통적 특성**]

- 자본집약, 기술집약, 노동집약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산업
- 규모의 경제효과가 중요한 산업 – 클러스터 경향
- 금융, 컴퓨터그래픽, 사운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타부문과의 높은 연계성
- 배후기지(스튜디오 등 촬영기반시설), 로케이션 등 리소스의 다양성이 중요한 산업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 결국 **영상산업은 대도시 중심** 산업일 수밖에 없다!

[21c **영상산업·문화의 새로운 조류**]

- 기술 발달과 사회관계망의 확대로 인해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 UCC→MCN
- '창작(생산)–소비', '아마추어–프로페셔널' 경계의 와해
- 산업 영역과 생활양식으로서 문화 영역의 혼재, 병존

[**창의성**(Creativity), **문화산업의 원형질 가치**]

- 문화에서 산업이란 창의성을 재화의 형태로 빚어내는 것, 또는 창작자가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 그 구조 → "창의 산업"
- 특히 유상(有償)의 재화가 될 때 **먹고사는 것, 일자리**, 부가가치의 문제로 확장
- 모든 창작물이 유상 재화가 될 수 없고, 모든 창작자가 용역의 제공자가 되어야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야 비로소 '재생산'이 가능**하다!

[**생활 영역의 문화가 산업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화학적 구성물들**]

- **용기(Vessel)와 용매(Solvent)와 촉매(Catalyst)**
- 용기 :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장
- 용매 : 소비자
- 촉매 : 자원(자본, 인프라)

[**그런데, 문화는 '산업'으로 가야만 '발전'이다?**]

- 문화는 산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탈산업 해야하는 것도 있다.
- 그 경계에 대해 엄밀하지 않으면 'GMO 창의성'이 발호하며, 모든 문화 창작자들이 산업의 말단으로까지 편재되어 포섭된다면, 그건 문화의 죽음이다.
- 생활의 영역에 양식(樣式)으로서 존재하는 문화는 그 자체로 융성해야
- **유상 재화로 전환되지 않는 창작물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향유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핵심**
- 산업과 문화 영역에 **구분되면서도 통합된 정책**을 시행하며, **두 영역 사이에 필요한 다리(Bridge)를 놓고, 화학작용이 필요한 지점에 적절한 요소를 투여하고 배치**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
-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은 공공영상문화정책으로서 다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을 위한 접근은 **생태적 관점에 기반**하고 집행해야! 즉, 영상문화를 진흥하는 것이 산업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역으로 산업 발전이 다중의 기본권적,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영상생태계

[정의 및 현실]

- '생태계'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일정한 연계망 속에 작동하면서 그 생산과 상호작용이 일정 수준의 '완결성'과 '자립성'을 갖추고 순환되는 체계를 일컫는 바,
- 영상분야에서 '생태계'를 적용한다면, '창작-투자-배급-관객-창작의확대및분화·고도화-관객층 확장 및 다양화'의 과정이 선순환된다는 의미
- 앞서 언급한 영상산업의 특성상, **대한민국은 서울을 정점으로 한 단일생태계**로 영상산업 및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영상 분야의 지역 생태계는 가능한가?]

- '문화산업'으로서 영상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며, 창의성은 '다

양성'에서 나옴. 그리고 다양성의 중요 축 중의 하나는 '지역성'임

- 지역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영상생태계 구축은 어려우며,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도 아님
- 지역 생태계는 대한민국 전체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는 **'상호의존형 소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측면에서 의미가 부여됨
- **소생태계는 전체 생태계에 역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생태계에 일정부분 의존하면서 그 고유성을 형성**함
- 지역의 영상문화 소생태계는 자체적인 순환구조가 불완전하므로, **①전체와의 유기적 연계 ②결핍요소를 보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 즉, ①지역에서 배출된 창작자(전문가/활동가)가 지역 내의 다른 창작자들(전문가/활동가)과 관련 활동을 함께 도모하고 지역의 관객들과 소통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창작-유통-관객'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한편, 전체 생태계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더 진척된 창작(활동)의 기회를 찾는 활동을 통해 **생태계 전체 속에서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②불완전한 지역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지자체)에서 교육, 제작 및 유통의 지원, 중앙과의 연결고리 확보 등의 사업들이 필요함
- 특히 ②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상호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단, 지역 영상 생태계 구축은 **1)인위적 추진이 불가능**하며 **2)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해야 하며 **3)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 공동체, 인프라 - 지역에 필요한 세 요소]

-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특화도시 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감. 이는 해당 분야의 특성과 지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정책으로 인해 기인한 바 큼
- 지역에 소생태계가 자리 잡기 위해 **①영상 창작자(활동가)를 육성**하고, 그들간에 그리고 그들이 일반시민들(관객)과 만나는 **②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③적정 규모의 인프라**(미디어센터 등의 제작

지원 시설, 극장 등의 상영시설과 망 등)를 구축해 제공하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 인프라의 경우, 앞 영상산업의 특성에서 언급한 배후기지로서 중앙과 분업이 가능한 시설은 지역별로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현실

[숫자1]

분야 \ 지역	사업체				인력			
	전체	서울	부산	인천	전체	서울	부산	인천
영화 기획 및 제작	400	316	21	2	4,133	2,702	376	9
영화 수입	50	49			750	740	5	
영화 제작지원	135	85	2		2,034	1,304	2	
영화배급	75	65	4		1,642	1,347	17	
극장 상영	367	75	29	18	19,956	5,919	1,693	1,099
영화 홍보 및 마케팅	56	53			828	803	2	2
DVD/온라인 등 부가판권	28	23	1		757	662	10	
합계	1,111	666	57	20	30,100	13,477	2,105	1,110
비중(%)		59.9%	5.1%	1.8%		44.8%	7.0%	3.7%
상영업을 뺀 비중(%)		**79.4%**	**3.8%**	**0.3%**		**74.5%**	**4.1%**	**0.11%**

출처: 2016한국콘텐츠산업통계조사(2015년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숫자2]

분야 \ 지역	매출액			
	전체	서울	부산	인천
영화 기획 및 제작	814,475	586,552	25,249	1,035
영화 수입	283,483	282,377	333	
영화 제작지원	152,667	64,001	8	
영화배급	910,741	864,536	297	
극장 상영	2,335,365	708,121	198,988	116,652
영화 홍보 및 마케팅	183,437	181,000	169	4
DVD/온라인 등 부가판권	432,051	411,056	1,104	
합계	5,112,219	3,097,643	226,148	117,691
비중(%)		60.59%	4.42%	2.30%
상영업을 뺀 비중		**86.05%**	**0.98%**	**0.04%**

출처: 2016한국콘텐츠산업통계조사(2015년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 단위 : 백만원

[**지역의 실태**]

- 대표적 영상산업 분야인 영화 제작사를 비롯한 영화산업 관련 대부분의 업체가 수도권(특히 서울)에 집중
- 즉, 지역 기반 창작자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거나 영화 관련 업종에 취업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의 영화 전공자들은 서울로 이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역 창작자의 공동화가 가속되는 한편, 제작 수요가 없으니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 또한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일반적으로 창작자는 지역에서 영상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하며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구심점의 부재는 지역 관객의 저변 확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독립영화, 예술영화와 관련해서 더욱 그러함

- 얕은 지역 관객층은 지역 창작자의 작품이 지역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고, 나아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게 됨
- 지역 내 영상물 창작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영상 콘텐츠와 관련한 지역의 중앙 의존도가 심해져 영상산업 전반의 다양성 또한 줄어들게 됨
- 결과적으로 **영상 관련 산업 및 문화적 활동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지역 영상 환경은 열악한 상황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영상산업 건강한 발전에 저해**됨

●● 지역 영상생태계 조성의 방향

[**지역 영상생태계와 관련된 현안들**]

● 지역 내 적절한 창작 기회

- **지역 창작자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자원**을 꼽을 수 있음. 특히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모든 제약 조건들의 출발점에 해당됨
- 또한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문 스탭(촬영, 녹음, 편집 등)들이 부재함에 따라 영상물의 완성도 제고가 더욱 어려움
- 전문 카메라, 녹음 및 조명장비, 편집실, 녹음실 등 장비나 시설 역시 지역에서 조달하기엔 쉽지 않음
- 따라서, **지역 창작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작에 임할 수 있는 제작비의 마련, 적절한 장비 및 시설 확보 등이 지역 창작자 육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지역 내 일자리

- '일자리'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지

역 내 생태계가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일자리가 부재함

- 일자리의 부재, 즉 영상 관련 활동을 통해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 영상창작자(전문가/활동가)들로 하여금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하는 주된 이유임
-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적 영역(지자체/공공기관)에서의 정책목표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 관객**

- 지역관객은 지역 창작자(활동가)가 배출되고, 그들이 만든 창작물을 수용하는 근간의 저변임
- 하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지역 관객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며, 다양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관람하는 층도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양질의 지역 내 콘텐츠가 창작되지 않는 이유가 크지만, **산업 전체에서의 과도한 중앙집권화 및 그에 따른 콘텐츠의 획일화**도 중요한 이유임. 즉, 관객 기호가 균일화돼 감에 따라 지역 콘텐츠는 물론 예술영화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영상 산업과 문화 전반의 다양성 확보, 지역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유통 및 배급**

- 유통 및 배급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고도화(자본화)된 분야로서,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인 망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산업 외적인 방식, 즉 공동체 상영이나 교육 현장과의 결합, 공적 유통망 등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여러 소비재들 중에서도 특히 문화 상품은 경험과 환경, 기호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매우 달라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객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 관객 개발은 반드시 교육과 연계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음
- 또한 지역 관객들에게 익숙한 영상물들을 공급하면서 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함께 보여주는, 이른바 “끼워팔기” 전략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

●●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역기반 창작자 육성**]

① **교육**

- 지역 창작자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특기적성, 방과후, 동아리 등)에서의 적절한 프로그램 시행. 이는 지역 관객 창출의 측면에서도 중요함
- 지역 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수요 해소. 특히 지역 창작자들의 제작 능력 제고를 위한 재교육 진행

② **다양한 제작 지원 사업**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반 제작지원 사업들은 일정 수준과 규모 이상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창작자들의 수혜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작지원 사업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절실함
- 이는 비단 지자체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체질을 건전화하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함
  - ☞ 국고(영화발전기금)와 지자체 예산의 매칭을 통한 지원 사업 시행으로, 지자체의 관심 환기와 예산 투여를 유도하고, 사업 확대의 레버리지 효과 기대
  - ※ 이는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영화발전기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으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제작지원금을 통한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현물지원 제도 또한 필요함

[**산업 인프라의 적절한 지역 분산**]

- 영상산업의 특성상 인위적인 지역분산은 부작용이 크나, 스튜디오나 촬영세트장 등 산업의 배후기지 성격을 갖는 인프라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지역 내 영상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함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하드웨어 구축]

① 미디어센터

-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영상 인력을 육성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건립·운영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건립되어 운영되는 미디어센터들은 1)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시청자미디어센터(40억 원 규모의 건립비) 2)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미디어센터(20억 원 규모) 3)기타 민간 미디어센터 등으로 구분되는 바,
- 다양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미디어센터를 대도시형/중소도시형, 거점형/지역밀착형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독립·예술영화관

-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상업영화 관객을 창출하는 것 외에 문화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에서도 상업영화 이외에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전용관 설치·운영이 절실하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지역에서 창작된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몇몇 영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상영관'도 중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데, 도서관 내 소극장, 구민회관, 기타 유휴 공공시설에서 상설/비상설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수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③ 복합영상센터

- 위 미디어센터나 독립·예술영화관은 복합영상센터 등의 이름으로 한 곳에 조성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러한 공간을 거점으로 '창작자/활동가-관객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

④ 생활문화지원센터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 건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역시 지역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위 복합영상센터 건립이 어려운 지방소도시에서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속에서 일정한 영상관련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보완**]

- 지역 영상산업 및 문화의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국고 및 영화발전기금을 일정하게 투여할 필요 있음. 이는 기존에 중앙(서울)의 산업 진흥 중심으로 편재된 영화발전기금을 일정하게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 영화발전기금만으로 모든 지역을 포괄해서 지원하기에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를 확보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서의 영상 창작 및 활동 지원에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뿐 아니라 정책과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적 규모의 육성 전략에 지역을 긴밀하게 포섭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지역으로부터의 요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상호 협력 및 보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간 중복, 과잉투자 예방**]

- 산업 분야에서 야외세트, 영상테마파크 등의 지역간 중복 투자는 지금까지 꾸준한 문제로 노정되어 왔음
- 지역 간 중복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전사회적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도 야기하며, 지역 내 영상문화, 산업 진흥에도 끼지는 악영향이 큼
- 따라서 지역 간 중복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역간 협의, 중앙정부(기관)의 조율 등이 중요함

[**지역내 거버넌스 – 지자체, 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 지역단체**]

- 현실적으로 지역내 영상생태계 육성을 위한 두 축을 영상위원회와 미디어센터가 담당해 왔음
- 이중 영상위원회는 공공적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 산업(촬영 등) 유치, 재원조달, 지역 내 창작 및 하드웨어 등 지원의 역할을

- 미디어센터는 지역 내 창작자 및 대중단체, 일반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교육, 창작지원, 유통지원 등의 역할을 맡아 왔음
- 두 단위는 자연발생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해왔는데, 지역에 따라서 협업 양상이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역할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그러므로 이 두 단위의 긴밀한 소통과 역할 분담, 협력을 통해 지자체를 지역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상호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사항임
- 또한 영상위원회나 미디어센터는 지역 활동가(창작자) 및 그 단체들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협력 사례를 만들고, 지역 내 필요 사항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발제3.]

지역영상문화생태계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허경

●● 현재에 대한 인식

[1_1. 2017**년 현재에 대한 인식**]

- 독립영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를 경과하며 추진되어 온, 이른바 영상문화지원정책/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인디스페이스 등 중앙정부/산하기관을 통해 확보한 지원거점(서울)을 기반으로 전국(지역) 확산을 시도하였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공동체상영운동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지역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지역) 확산/수렴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무렵, MB정부 출범과 함께 지원거점은 정치적 배제로 인해 취약해졌음.
- 정부/정권의 변화가 전 정부 정책의 폐기 및 관련 민간주체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배제로 이어지는 악습을 청산/방지하기 위한 정책원리와 행정체계의 재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즉, 민간(국민)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정(행정)운영 체계-협치체계의 설계가 빠진 '지역영상문화정책'은 '10년 전으로 복귀'에 그침.

[1_2. 2017**년 현재에 대한 인식**]

- MB정부의 조건 변화에 영향받으며 또는 이와 무관하게, 지역미디어센터/독립예술영화전용관/지역영화단체/지역영화인 등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자체 정책과 연계하며 현재까지 생존/운영/활동해옴.
-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영상문화와 관련된 주체들의 정치적/정책적 환경은 2번의 대선/3번의 지방선거/3번의 총선 등 상대적으로 훨씬 복잡다단한 외부환경 속에서 활동해왔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무관하게 '지역'주체들의 정치적/정책적 환경은 거의 항상 열악했음.
-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산하기관의 영상문화정책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으나, 지역/지자체의 정치/정책환경 긍정적의 변화를 추동/지향/포함하지 않는 개선책은 '10년 전으로 복귀'라는 한계를 가짐. \
- 그래서, '지역영상문화지원정책'은 새 정부의 지역(자치)분권/지역문화분권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1_3. 2017**년 현재에 대한 인식**]

-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현재의 조건은 매우 열악함. 즉, 최근 일반적 수준으로 도출한 '적폐'는 해소해야함을 확인했을 뿐 대부분 그대로이고, 개별 적폐의 경과와 내막, 작동/방어의 기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
- 또한, 해결작업의 설계도를 함께 만들고 협업해야 할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이 지난 10년 간 살아온 '땅과 공기'는 너무 다름. 즉, MB정부의 시작과 함께 배제된 주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주류인 주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안 마련에 있어 민간 간 이견/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기임. 또한, 혁신의 대상이자 협력해야 할 대상인 행정의 내부구성원은 10년 전부터 일했던 사람, 경력이 10년이 안 된 사람, 10년 전에도 협업이 안 되던 사람, 10년간 협력이 되던 사람 등이 혼재해 있음.
-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인식의 프레임(영역별 전문화에 따른 필연)에 대한 성찰, 소통과 이해를 위한 인내가 절실하며, 이후 과정은 상호소통의 훈련과정이자 소통시스템의 구축과정(장기간의) 이어야 함.

●● 개념-정책주체-지원사업

[2. **지원해야 할 '지역영상문화활동','생태계'의 개념**]

● 지역영상문화활동

지역의 영상(영화)분야 전문가 및 주민이 영상(영화)를 통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과 관련되어 펼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교육, 제작, 배급, 상영 등을 포함

● 지역영상문화생태계

영상(영화)분야 전문가는 자신의 삶/생활의 근거지인 지역/공동체에서 영상문화활동을 어려움없이 지속할 수 있고, 주민 역시 자신의 삶/생활의 근거지인 지역/공동체에서 누구나 영상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되, 두 주체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자원이 공유/연계되어 상호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함

[3. **지역영상문화생태계 지원정책 주체 구획**]

	중 앙	지 역		비 고
정 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시/도	시/군/구	
지원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생활문화진흥원 - 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재단 - 문화산업진흥원 - 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는 지역마다 위상차이가 있음
지원사업 실행주체	- 지원기관 산하 시설(센터) - 영화/영상 전국 협단체	- 미디어센터/영화관/주민지원 등 시설 - 민간단체(기업)/시민사회단체 - 주민모임 - 영화인/활동가 등 개인(전문가)		실행주체이자, 지원대상이기도 함

미디어교육/영화상영 등을 지원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제외하였고, 이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간 조율/협업을 통한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함'으로 대체 (*위 표는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연구(2016/영진위)'보고서의 35페이지 표7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4. **지역영상문화생태계 지원사업 구획**]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식(전달)	지원 주체			
			중 앙		지 역	
			문화부	영진위	정부	산하 기관
생산자/예술가/활동가로서 영화인/활동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제작 지원	- 개인 직접 지원	X	○	X	○
		- 제작단체를 통한 지원	○	○	○	○
	유통 지원	- 개인 직접 지원	X	○	X	○
		- 배급사/영화관/제작사를 통한 지원	△	○	△	○
	역량 지원	- 개인 직접 지원	△	○	○	○
		- 제작사를 통한 지원 - 기관/협단체/시설/단체를 통한 지원	○	○	○	○

	생활 지원	- 기본 복지제도 - 예술인/영화인 복지지원 - 제작자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	○	○	○	○
향유 및 생산자로서 주민 개인에 대한 지원	활동 지원	- 모임(동아리/단체)의 사업 지원	X	○	○	○
		- 기관/협단체/시설/단체를 통한 지원	○	○	○	○
영화인/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실행주체로서 시설/협단체/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 지원	- 지자체를 통한 지원 - 직접 지원	△	○	○	-
	사업 지원	- 지자체를 통한 지원 - 직접 지원	○	○	○	-

* **지원사업 구획 표설명**

- 간략한 표구성을 위해 지역정부의 산하기관은 '지원사업의 실행주체'에서 제외하였으나, 문화부/영진위 및 지역정부의 운영/사업 지원이 가능함.
- 지원주체에서 중앙정부는 문화부, 산하기관은 영진위로 한정하였으며, 유관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과의 조율과 협업을 전제로 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작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 진흥원 등을 통한 지원, 기업형태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한 지원 가능
- 지원의 주체가 문화부가 될 건지, 영진위가 될 건지에 대한 역할조정은 추후 정리해야 함.
- 지원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될 건지, 지역정부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역할조정을 해야 하되, 지역분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과도기에는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의 실행주체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를 통할 건지, 직접 지원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행하되, 지역분권/민관협치에 부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지원사업의 근간에 있어야 할 목표_분권과 협치**]

● 지원대상이 정책수립/추진을 위한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지원사업

- 중앙정부는 지역정부가 자체적인 영상문화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함.

- 정부/산하기관은 시설/협단체/민간단체가 영상문화진흥정책/사업을 직접 수립/추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강화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지원을 해야 함.
- 시설/협단체/민간단체는 주민/구성원 등에 의한 참여적/민주적 사업기획/추진을 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민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시민력)이 강화되는 지원을 해야 함(공공시설의 시민자산화 지향)

●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실행주체 간 소통/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및 네트워크의 구축/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이 지원주체에 따라 줄을 서, 자아분열 하거나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지역 내 지원대상이 서로 확인하고,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 함.
- 단순히 '공정함'만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전달하는 기능으로는 부족

●● 혁신의 방향

[6. **지역분권을 위한 지역영상문화 행정 혁신방향**]

● 산하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 정부는 국가단위/해당지역단위의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수립하고, 산하기관은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정부는 이에 대해 협력하고 효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
- 정부와 산하기관 간, 사업 및 예산계획 실행을 위한 중기(3년)협약 체결을 통해 산하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문화예술 지원구조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 (2017년/이규석) 참고
- 산하기관은 민간의 참여(협치)를 통한 정책수립 및 사업실행

● 지역(지자체)의 특수성과 현실에 부합한 지원사업 추진

- 다년간/포괄적 지원을 지향하고, 지자체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지역별 다른 내용의 지원 가능(지원기관과 지자체와 중기협약 체결을 통한 방식)

● **지역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산하기관의 의사결정구조 마련**

-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와 같은 성격/기능을 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개발 및 적용

[7_1. **협치를 위한 지역영상문화 행정 혁신방향_전제**]

● **정부/산하기관의 인식 전환**

- 지원대상(민간주체)를 공공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공공책무성을 갖는 주체로 규정하고, 공무원은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로 역할 해야 함. *협치서울(2017년/유창복)참고

● **민간의 인식전환**

- 행정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마찰(복잡한 절차와 서식/언어의 차이로 인한 경과적 불통)의 과정을 감수할 것에 대한 의사와 각오 필요 *협치서울(2017년/유창복)참고
- 민간 간 '칸막이'를 넘어서기 위한 소통의 노력과 상호신뢰 필요

● **협치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마련**

* 협치서울(2017년/유창복)참고
- '정보제공 > 협의 > 개입 > 협업 > 권한부여'의 협치 단계
- 권한은 '민간주도의 정책발의'와 '예산편성권한'이 핵심

[7_2. **협치를 위한 지역영상문화 행정 혁신방향**]

● **협치지향적 행정절차 개발**

*협치서울 85페이지(2017년/유창복)발췌
- 정책의제의 발굴과정(문제 진단 시 시민당사자의 초대, 문제 진단 및 의제설정 워크숍 등)
- 정책파트너 연결(민간 파트너와 행정 타부서 및 자치구담당자 등 민-관

–관의 협력 파트너십 형성)
- 융합적 정책사업 설계(타 부서의 유관 사업들과 연계하여 융합사업으로 공동설계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
- 워킹그룹형 협동적 실행조직(합동실행단, 공동사업 전담조직 등)
- 협치적 평가시스템(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참여자 주도형/융합형 평가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등)

● **민간위탁제 개선**

- 대상업무 선정기준, 수탁단체의 선정절차, 위탁계약(협약)내용구성, 성과관리 방안, 위수탁 양자간 협업 방안 등

● **산하기관(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

- 지역영상문화정책/사업 추진 기관에 부합한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 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참고

●● 영화진흥위원회 혁신 방안

[8_1.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혁신의 방향**]

● **'참여 + 협치 + 분권'의 운영원리**

- 정책/사업의 '기획–수립–추진–평가'의 전 과정을 지역과 영화계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는 영진위
- 참여와 협치를 통해 권한을 지역과 민간에 이양을 지향하는 영진위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 정부로 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진위
- 가치를 중심으로 환경변화를 고려한 비전/정책생산 능력, 민간역량을 키우는 지원사업수행역량,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 공공기관 운영역량 등을 갖춘 영진위

●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영진위

- 위상과 역할에 부합한 의사결정구조, 재원조달, 조직운영원리, 직원의 업무방식, 평가지표 등을 갖춘 영진위

[8_2.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위원회 구성과 운영**]

● **민주적 위원 구성 및 운영**

- 공개적/참여적인 선임 절차 마련 및 위원장 호선제 도입(공운법 개정 등)
-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안 마련(지역 할당, 지역활동경력 고려, 지역 소위원회 등 고려)
- 영진위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임 방안 마련(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참고)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외부 공개 의무 등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 **위원회 전문성 제고**

- 주요 정책/사업 영역을 반영한 분야구성 및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 구성
- 문화/미디어/교육 등 유관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네트워킹을 고려한 위원 구성

● **위원회 역할 재정립**

- 전문분야의 민간주체와의 소통 매개를 위한 역할 부여
- 소위원회 구성 분야 재구성 및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지역영상문화 소위원회 신설

[8_3.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 개편 방향**]

● **분권/협치의 원리를 구현하는 체계 마련**

- 지역/협치 자문역을 민간 개방직으로 신설

> 지역/영화계 + 유관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업무담당

> 영진위 제반사업이 민간/지역과 협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스템 마련

>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매개 및 시스템 마련(지역영상문화생태계 사업 등)

> 지역 및 민간과 협력사업을 위한 포괄사업예산 운용

● **지역/영상문화 관련 전담부서 설치**

– 지역영상문화본부 또는 영상문화본부 신설(전환)

– 본부장 민간 개방직 고려

● **주요사업수행을 위한 집행단위(센터) 설치**

–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 초기 시민대상지원과 독립영화인 지원을 병행하던 센터를 분리 확대

– 센터장 민간 개방직 채용

● **'위원회-소위원회-부서-집행단위' 간 연계를 위한 체계 마련**

– 지역영상문화본부 및 양 센터는 '지역영상문화 소위'가 운영위 역할

[8_4.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개편 방안**]

–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 지역영상문화본부(또는 영상문화본부) 신설,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및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영상문화

와 관련한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함

- 지역/협치 자문관 및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팀구성방안 및 업부분장 등 세부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신설 직제, 조직, 기구는 민간 개방직 채용을 통해 전문성/협치/자율성 등을 확보함
- 당 내용은 '논의를 위한 자료'로 이후 조직 전체에 대한 내외부의 개편논의 및 연구를 통해 조정/수정/보완 되는 것을 전제로 함.

[8_5.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개편 방안**]

	구 분	1-1안	1_2안	비 고
1안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국장급/개방직	
	영상문화본부 신설	본부장 개방직		기반조성본부 전환
	영상문화본부 산하,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센터장개방직 (팀장급)		센터 외 영상문화본부 산하 팀구성 추가 필요
1_1안	구 분	1_1-1안	1_1_2안	비 고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국장급/개방직	
	지역/협치 자문관 산하,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센터장개방직 (팀장급)		센터 외 자문관 산하 팀구성 추가 필요

[8_6.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개편 방안**]

	구 분	2-1안	2_2안	비 고
2안	지역영상문화본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본부 내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	본부장 개방직	팀장급 개방직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센터장개방직 (팀장급)		센터 외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팀구성 추가 필요

	구 분	2_1_1안	2_1_2안	비 고
2_1안	지역영상문화본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지역/협치팀 신설	팀장 개방직		센터 외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팀구성 추가 필요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센터장개방직 (팀장급)		

[8_7.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개편 방안**]

	구 분	3_1안	3_2안	비 고
3안	지역영상문화본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본부장 내부직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 센터장개방직(팀장급) - 각 센터별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팀장급/개방직)		센터 외 지역영상문화본부 산하 팀구성 추가 필요

[8_8.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조직개편 방안**]

	구 분	4-1안	4_2안	비 고
4안	지역/협치 자문관 신설	본부장급/개방직	국장급/개방직	
	영상문화본부 신설	본부장 개방직	본부장 내부직	
	한국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독립영화지원센터 설치	- 센터 민간위탁 - 지역/협치자문관 담당사업	- 센터 민간위탁 - 사무국장 직할 사업	센터 역할/특성을 고려 민간위탁 여부 각각 판단 필요

[8_9. **영화진흥위원회 혁신방안_기타(하지만 중요한)**]

● **지원사업의 영역 재구획과 세부사업 재편**

– 체계적 정책/사업을 위한 정비의 차원(선택과 집중),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대한 고려의 차원에서 필요

- 부당하게 삭감/조정된 사업의 복원, 비전과 주요정책에 따른 백화점식 사업영역 재편
- 특히, 새 정부의 공약재원마련에 따른 재정운영계획 고려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재원 감축을 통한 재정구조개혁 기조가 제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10% 줄인 부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미달한 부처에는 페널티를 주기로 함.

● 지원사업 운영 개선

- '공모>심사>지원>정산(평가)'의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지원사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형식의 비용매칭(지원:기부:자부담=5:3:2)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 개발
-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오픈형 지원사업 분야 신설. 적정분야와 규모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 특히,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통한 내용생산 중심의 사업 외, 민간주체의 정책역량강화와 현장요구의 정책화를 목표로 소규모의 정책연구사업/정책모임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

● 평가지표 개선

- 영화와 영상(영화)문화가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영진위의 역할과 운영을 전면재편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혁신) 작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의제화 등 공동대응이 필요
- 또한 각 부서별/사업별 특성에 부합한 내부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특히 결과 외 협치의 과정/절차에 대한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비중을 확대할 필요

● 혁신을 위한 절차 마련

- 즉시반영과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
- 즉시반영과제, 단기과제 설정을 위한 소통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제는 중장기과제의 도출과 해결의 호조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함
- 민관협력 한국영화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영진위 전면혁신방안(영비법 전면개정을 포함) 수립 등을 목표로 장기간 운영

관련 경과

일 자	제 목	주요내용	비고/참고
2011년 3월8일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발전방안 공청회(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미디어센터 발전방안 발제 및 토론	
2011년 4월6일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차 공청회(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방안 발제 및 토론	2011년3월30일 김의석 위원장 취임
2012년 2월10일	서울시 영상(영화)미디어정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전미협/한독협/미디액트)		
2012년 6월26일	점검! 영진위 독립영화 정책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토론회	-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발제 및 토론 - 지역미디어센터를 아우르는 대표미디어센터로서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비전 제안	
2012년 8월6일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관 사업 관련 간담회(전미협 제안)	서울시의 영상(영상문화) 및 참여미디어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2012년 9월4일	서울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전미협/미디액트/마을센터/관악FM)	서울시 마을미디어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전망에 대한 발제와 토론	'영상문화향유권 강화정책 점검과 과제'를 연속토론회로 기획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함
2012년 11월28일	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세미나(전미협)	지역미디어센터 상영(관)사업 활성화방안(문화부/영진위/독립영화배급사 등 패널 참여)	
2013년 4월3일	지역주민의 영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문화부)	작은영화관/지역미디어센터 정책활성화 방안(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자 참여)	2013년2월25일 박근혜 취임
2013년 4월24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 4인 사퇴		

2013년 4월26일	지역민의 영화영상문화 향유권 강화방안 모색(영시미/영진위)	- 전북지역 영화영상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발제 및 토론 - 문화부, 영진위, 전북도, 전북독협 등 패널 참여	
2013년 5월22일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추진단 1차 회의		
2013년 7월4일	독립영화유통지원센터 공청회		
2013년 7월23일	지역미디어센터 정책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전미협)	- 문화부/영진위 중심의 지역미디어센터 정책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 - '영진위 지역영상문화진흥본부' 및 '한국영상미디어센터+독립영화지원센터' 모델 제안	
2013년 8월14일	지역 영상·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전미협)	-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지역 영상·미디어·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재구성 및 확대를 위한 논의 - 문화재단, 영상위, 미디어센터 관계자 참석	
2013년 12월26일	지역미디어센터 상영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미협)	- 지역미디어센터 상영관의 '독립·예술영화 비상설 개봉관 시범 사업' 점검 및 토론 - '작은영화관-미디어센터상영관-예술영화전용관-독립영화전용관-찾아가는영화관' 등 상영관 정책 정비 과제 제시	2013년 10월 영진위 부산 이전
2013년12월30일: 문화기본법 제정 2014년1월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4년5월28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2월13일	서울시 시네마테크/복합영상문화공간 조성 TF(서울영상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기능이 포함된 복합영상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민관 협의 본격 진행	
2014년6월4일: 민선6기 지방선거			
2014년 9월1일	지역문화융성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모색(제주도의회/제주영상위/전미협 등)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영상문화/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2014년 11월17일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전미협)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체계 재구성방안 논의를 위한 전미협 내부 세미나	
2014년12월31일 영진위 5기 출범(김세훈 위원장)			
2015년 3월25일	서울시 영화 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 발표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의 제작부터 마케팅/상영/배급 전 단계 지원' 등 발표	

2015년 4월30일	서귀포시의 영상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제주도/제주도의회/영상위/전미협 등)	서귀포시 영상문화/영상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	
2015년 5월7일	지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전북도/영진위/영시미/전미협 등)	작은영화관의 영상문화적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2015년 5월21일	강원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작은영화관 활성화 워크숍(강원도/영진위)	작은영화관의 영상문화적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2015년 6월29일	한국 영화·영상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영화평론가협회)	영화·영상 산업 및 문화 주체의 한 축인 관객·수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 2015년6월1일 발의(대표발의 : 유은혜) - 2015년12월31일 : 개정안 국회통과 - 2016년2월4일 : 개정안 공포 - 2016년8월4일 : 시행			2016년4월13일 20대 총선
2016년 7월15일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유은혜 의원)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영비법 개정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2016년 9월	지자체별 영상문화 향유권 신장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영진위)	'영상문화 향유권' 정의/범주/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2016년 10월17일	지역영상생태계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유성엽의원)	지역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2016년 10월31일	충남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활성화 워크숍(충남도/영진위/충남문화산업진흥원/서천센터/전미협 등)	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재구성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노의	
2016년 12월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보고서 발간(한국문화광광연구원)	작은영화관 사회적효과와 발전방안 도출	
2016년 12월28일	경남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활성화 워크숍(영진위/진주센터 등)	경남 지역 예술영화전용관/경남영화협회/지역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 등 참여로 지역영상문화향유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2017년3월10일: 박근혜 탄핵			
2017년 4월	충남 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 출범	충남도 및 관내 기초지자체, 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참여	
2017년	지역영상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극장,	

4월7일	위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출범	영화공동체 '길동무', 영화사 '필름에이지', 문화콘텐츠 그룹 '잇다' 등 참여	
2017년5월9일: 20대 대선			
2017년 5월24일	대구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문화 정책네트워크 출범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성서공동체FM,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오오극장),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대구마을TV) 등 참여	
2017년 5월30일	영화정책 의견수렴 간담회(문화부)	영화단체 대상 의견수렴	
2017년 6월15일	영화정책 의견수렴 간담회_18년 영발기금(영진위)	영화단체 대상 의견수렴	
2017년 6월23일	충남 영상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충남연구원)	충남의 영상문화 협의체 발족에 맞춰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방안 논의	
2017년 7월10일	독립영화인 정책토론회_1차(한독협 등)	독립예술영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8년 영진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토론	
2017년 7월11일	영화계 영역별 간담회_지역영상문화향유 및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영역(영진위)	지역미디어센터(전미협), 지역영상위원회(한영위), 지역독립영화협회(지영네), 독립영화인 등 참석	
2017년 7월14일	영화진흥위원회 제역할 찾기(전재수/조승래의원)	영화진흥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함	7월14일까지 영화단체 대상 영진위원 추천 요청 (문화부)
2017년 7월19일	한국영화정책포럼(부천영화제/한독협)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해보고, 상생할 수 있는 한국 영화 정책을 모색	
2017년 7월21일	독립영화인 정책토론회_2차(한독협 등)	- 독립예술영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영진위 정책/사업 방안에 대한 토론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결성	
2017년 7월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위 내용은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내용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추가/보완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약칭 「사회적 가치 기본법」)

(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6. 17.

발의자 : 문재인·강창일·김 현·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동철·김상희·김성주·김우남·김재윤·김태년·김현미·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희상·박기춘·박남춘·박완주·박주선·박지원·배재정·부좌현·설 훈·신경민·신계륜·안규백·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승희·유인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목희·이상민·이상직·이원욱·이학영·이해찬·임수경·장하나·전병헌·전해철·정성호·정세균·정청래·정호준·조정식·진선미·최동익·최재성·추미애·홍영표·홍익표 의원(60인)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제17조).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제23조).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정책수립 및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실천을 달성하여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사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의 기제를 규율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정신을 실천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수행되는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사람중심의 경제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다른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6.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사회적가치성과평가”란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조사·예측·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 없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공공기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본이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 가치 실현대상의 범위와 역할

제6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조달과 행정사무 민간위탁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사업(공사 및 용역 포함)
3.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업

4. 기타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하는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제7조(공공기관의 조달 및 위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행할 때 사회책임조달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나 위탁 등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8조(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계획수립·시행·성과평가 시에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우선참여 보장
2.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3. 계약방식 변경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등

④ 공공기관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⑤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 용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수행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 등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④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조의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이하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립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5조(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항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대상인 공공부문 사업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관한 승인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사업의 범위 결정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주체 및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통해 창출된 가치규모와 실적 등을 취합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회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의 원칙과 체계

제18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민간분야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서비스 등 기존 국가제공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적 가치 우선고려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확대를 위한 사항
6.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제19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기업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도입
4.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제20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임대기간 사용수익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③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23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공유재산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조성, 재정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 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거나 금융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원칙과 방식

제24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사회적가치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제25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절차) ① 공공기관은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시행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체평가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

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부문별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고한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사회적가치성과평가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은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가치성과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가치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 기관이 수행한 사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포상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및 평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구매 및 정책시행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공공기관
2. 활동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개인, 기업 또는 법인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평가에 관한 정보교환,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11조)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안 제12조),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안 제16조), 시·도지사는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7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안 제23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의 대상도 현재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추계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2)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도지사가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2015년에 24억 4천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 23억 7천7백만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115억 9천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추계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재정지원은 추계상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기본계획	150	-	-	-	-	150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150	-	-	-	-	150
사회적가치위원회	12	12	12	12	12	60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136	136	136	136	136	680
사회적경제지원기관	1,992	2,052	2,109	2,168	2,229	10,550
합 계	2,440	2,200	2,257	2,316	2,377	11,5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이 선 주
예 산 분 석 관 박 연 서
(788-4741, mileend@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계획(안 제11조)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안 제12조)

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계에서는 유사 사례[1]를 참고하여 관련 연구용역비 등으로 각각 150백만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므로 2015년에 한번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한다.

[표 2]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관련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기본 계획	150	-	-	-	-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150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계에서는 15명을 민간위원으로 가정하였으며, 제정안에서 상임위 여부

1) 2013년에 수립된 '협동조합기본계획'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백만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였음

와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임위원으로 가정하고 연 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한다.

[표 3]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적가치위원회	12	12	12	12	12

주: 위촉직위원 15명에 대해 1인당 회의수당 10만원, 안건검토사례비 10만원, 1년에 4회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안 제17조)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규모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추계에서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므로 위촉직 위원은 10명이 해당되며 이들에게 연 4회의 회의 개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또한, 지역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표 4]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136	136	136	136	136

주: 위촉직위원 10명에 대해 1인당 회의수당 10만원, 안건검토사례비 10만원, 1년에 4회 적용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는 것으로 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안 제20조)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성 및 자

금 지원,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그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의 대상도 현재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등(안 제22조)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 대상도 현재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한다.

6.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23조)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번 추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도록 한다. 동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설립 인가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진흥원[2]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위탁사업

비로 1,49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에는 1,940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또한 위의 사례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지원사업에서도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또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추계에서는 협동조합 지원 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위탁사업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며, 2015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표 5]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설치·운영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적경제지원기관	1,992	2,052	2,109	2,168	2,229

주: 1)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사업의 위탁사업비와 동일한 금액을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15년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추계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전망치 적용
2015년 2.7%, 2016년 3.0%, 2017년 2.8%, 이후는 2017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도지사가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2015년에 24억 4천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 23억 7천7백만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115억 9천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추계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재정지원은 추계상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2)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기본계획	150	-	-	-	-	150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150	-	-	-	-	150
사회적가치위원회	12	12	12	12	12	60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136	136	136	136	136	680
사회적경제지원기관	1,992	2,052	2,109	2,168	2,229	10,550
합 계	2,440	2,200	2,257	2,316	2,377	11,5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MEMO

MEMO